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6. 2.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5년 5월 21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5년 5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 6. 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

####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 활성화 구역' 을 '상권 활성화 구역' 으로 변경 (안 제2조, 제5조제2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32조)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 (안 제3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 에서 '신고' 로 완화 (안 제2조제3호,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 부칙의 조례 유효기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 현행 조문의 ‘시장 활성화 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sup>1)</sup>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며,
    - ‘상권 활성화 구역’이란 ‘시장 활성화 구역’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구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sup>2)</sup>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최근 2년간 인구·사업체수 감소)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타당함.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
    - 종전 ‘전통시장’의 개념은 상업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였고, ‘전통시장’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등록시장’ (대규모 점포)과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으로 구분 하였으나,
    - ‘전통시장’의 개념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 되었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통합조정 되어 본 조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상점가”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인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2)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우 : 400개

례에도 이를 반영 하려는 것임.

- 현재 우리구 총 25개소의 점포 중 전통시장은 13개소 상점가는 10개소, 기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상세내역 별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 ‘임시시장’ 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임시시장’ 장소가 토지의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유(법 제14조 제1항 각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li><li>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li><li>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li></ol> |
|--|

-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개설 요건 완화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유효기간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4.10.22. 제정되어 2016.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운

영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4 호
----------	--------

제출연월일 : 2015.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나타난 주민 부담적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 제5조제2항, 제12~15조, 제32조)
- 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안 제3조, 제7조~제11조)
- 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안 제2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 라. 부칙의 2016.12.31.까지로 정해져 있는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개선사항 반영)

- ① 제6조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중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건축법, 주차장법과 더불어,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함
- ② 기존 시장의 유형을 전통시장(제2장)과 인정시장(제3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던 것을, 전통시장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제2장(시장의 관리 및 운영)과 제3장(시장의 운영)의 제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자칫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장의 제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3장의 제목을 “시장의 인정”으로 변경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03.26 ~ 2015.04.15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상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시장·시장”을 각각 “시장·상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매업·소매업”을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으로,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을 “곳으로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 시장”을 “따라 상권”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를 “『건축법』,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운영”을 “시장의 인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산정하는 점포는 시장구역”을 “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설정기준)”을 “(시장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인정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을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을 “상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 구역의 관리)”를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청장은 시장”을 “구청장은 상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한다.

제16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를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제20조”를 “법 제2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시장”을 “시장、상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상인조직에게”를 “상인조직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시장”을 “시장、상권”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장、시장”을 “시장、상권”으로 한다.

제41조 중 “수납이 외”를 “수납 이외”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3조(시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 활성화 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시장 활성화 구역</u>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점포”라 함은 <u>시장</u>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p> <p>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u>등록</u>한 시장을 말한다.</p> <p>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u>제2조제6호</u>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p>	<p>제2조(정의) ----- -----.</p> <p>1. ----- -----<u>상권</u>----- ----- ----- -----.</p> <p>2. ----- <u>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u> ----- ----- -----.</p> <p>3. ----- ----- ----- ----- ----- ----- ----- <u>신고</u>----- -----.</p> <p>4. ----- -- <u>제2조제7호</u> ----- ----- ----- -----</p>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생략)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로 등

-----  
-----  
-----  
-----  
-----.

5. -----  
-----  
-----  
-----  
----- 시장·상권 -----  
-----  
-----.

6. (현행과 같음)

7. -----  
-----  
-----  
----- 시장·상권 -----  
-----  
-----.

8.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  
-----  
----- 곳으로서 -----  
-----

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5. (생략)

② (생략)

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정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상권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 「건축법」,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장 시장의 인정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  
-----  
----- 시장구역-----

하는 점포는 시장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조(인정시장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장의 설정기준) ① 시장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시장 -----  
-----  
-----  
-----  
-----  
-----  
----- 시장 -----  
-----.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 략)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  
----- 시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

청장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

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제14조(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 상권  
-----  
-----  
-----  
-----  
-----  
-----.

제15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

청장은 상권 -----  
-----.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

-----  
----- 신고-----  
-----.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  
----- 임시시장의 개  
설-----.

- 1. -----  
----- 신고-----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4. (생략)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③ (생략)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생략)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

2. ----- 개설신고서-----

-----  
-----  
-----  
-----

3. 4.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시장 -----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법 제20조 -----  
-----  
-----

2.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④ (생략)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  
----- 시장·  
상권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상인조직에 -----  
-----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위탁관리) ① ----- 시장·  
상권 -----  
-----  
-----  
-----  
-----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이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시장、상권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지방세의 준용) -----  
----- 수납 이  
외-----  
-----  
-----.